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신홍식 의원 대표발의】



2024. 02.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293호로 2024년 2월 8일 신홍식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4차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이뤄지는 정보·의료·교육서비스 등의 지식집약적 산업으로서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이에 급변하는 경제구조에 조응하기 위해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4차산업 기업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등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4차산업 육성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24. 2. 13.~ 2. 18.):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4차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의 차세대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 “4차산업 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림.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와 제6조(실태조사)는 4차산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4차산업 육성기업 선정)와 제8조(4차산업 육성기업 등의 지원)는 기본계획에 따라 4차산업 육성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검토 결과

- 정보 및 통신 기술(ICT) 과 기존 영역의 경계가 융합된 4차 산업혁명¹⁾ 시대가 빠르게 도래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국정과제로 삼아 4차사업을 선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²⁾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 변화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있음. 또한,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21.7.20.)를 제정하여 미래형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시행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4차산업 기업 육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다음과 같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추세임.

번호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일자
1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 3. 26.
2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 12.11.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 11.10.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 12. 27.
5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23. 8. 1.

- 현재 우리 구(區)는 과거 제조업 위주의 산업에서 탈피하여 4차산업 관련 기반 마련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³⁾을 시행하고 있는바, 본조례 제정은 4차산업 관련 기업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행정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

1)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중심의제로 채택되어 이슈화되었음.

2) 4차산업혁명위원회(2017.10.11.~2022.08.22.),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2022.09.02.~)

3) 「2024년 지역연계형 소설벤처 창업지원」, 「창업지원센터 입주지원」

참 고 자 료

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삼차원프린팅산업”이란 삼차원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를 생산(製造·加工·組立·再生·改造 또는 修理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의 整備·修理·改造등 航空機使用者가 그 運航上의 필요로 행하는 作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우주비행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